

2026년도 연구실 안전 전담조직 지원사업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관리 수준 향상과 기관 자체의 자율적 안전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대학·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연구실 안전관리 전담조직 구축·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6년도 연구실 안전 전담조직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2월 23일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 경 훈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장 이 황 원

1. 사업 개요

□ 목 적

- 대학·연구기관 등에 연구실 안전관리 전담조직 구축·운영 및 전담 인력 확충 비용 등을 지원하여 기관의 안전관리 수준 및 전문성 제고

□ 신청대상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을 적용 받는 대학 및 연구기관

□ 지원규모 및 항목

- 총 사업기간 : '26. 5월 ~ '27. 12월(최대 2년)*
 - * 매년 말 연차평가를 실시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차년도 계속지원 여부 결정
- 당해연도 사업기간 : '26. 5월 ~ '26. 12월
- 지원규모 : 아래 기준에 따라 기관당 최대 9천만원 지원(1개 기관 선정 예정)
 - ※ 지원규모는 지원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금액은 조직 구축 및 활동비, 신규 채용인력의 인건비로 집행 가능

2. 신청자격

- 연구실 안전관리 전담조직을 운영 중이거나 설치 예정인 대학·연구기관으로서 관련 인력의 증원 수요*가 있는 기관

* 신규채용(정규직, 비정규직), 내부전환(타부서 인사발령, 겸임→전담) 등

※ 신규 채용 인력에 대해 높은 점수 부여 예정

[참고. 연구실 안전 전담조직]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전담하는 부서장 1명과 전담인력 1명 등 최소 2명 이상의 전담인력으로 구성된 독립부서(본부·센터·과·팀·계 등)

* 전담인력 기준 : 연구실안전법에 따라 지정 신고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중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하는 업무만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인력

3. 지원내용

- (조직 구축·운영 및 활동비) 전담조직 구축·운영 및 안전관리 활동비 등
 - (전담조직 구축·운영비) 조직 구축·확대·운영에 따른 경상경비, 자산취득비 등
 - (안전관리 활동비) 기관 연구안전 체계구축, 안전관리 활동에 따른 비용 등
- (채용인력 인건비) 채용인력의 인건비(기본급 등)·인건비성 경비 등

< 사업 지원항목 >

| 항목 | 구분 | 목적 | 지원 항목 |
|----------------------|--------------------|-------------------------|---|
| 조직 구축 · 운영비 | 전담조직 구축·운영비 | 전담조직 운영·관리 | · 출장비, 여비, 안전관련 회의비 등 조직 운영 및 활동비 등 · 사무실 환경개선 및 피복비, 측정 장비 등 자산취득 등 |
| | 연구실 안전관리 활동비 | 기관 연구안전 체계 강화 | ·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 및 규정 제·개정 등 · 연구안전 업무 종사자의 직무관련 교육·훈련비 등 · 연구실 단위의 안전관리 계획 승인·관리 체계구축 · 기관 내 업무 협력 활성화 지원(우수 관계자 포상, 관계자·부서 워크숍, 안전 업무 활동 지원 등) · 정보관리 체계 구축(연구실 현황 정보, 유해위험물질 이력관리 등) |
| | | 안전관리 활동 지원 (기관차원) | · 안전체험·실습장 등 안전 인프라 구축 · 지역 내 연구실안전 네트워킹 강화(워크숍, 세미나, 간담회 등) · 안전문화 홍보·교육 목적의 행사 및 매뉴얼 개발 등 |
| 인건비 | 채용인력 인건비 | 전담인력 확보 지원 | · 신규 채용인력의 인건비(기본급) · 기본급 외 각종 수당 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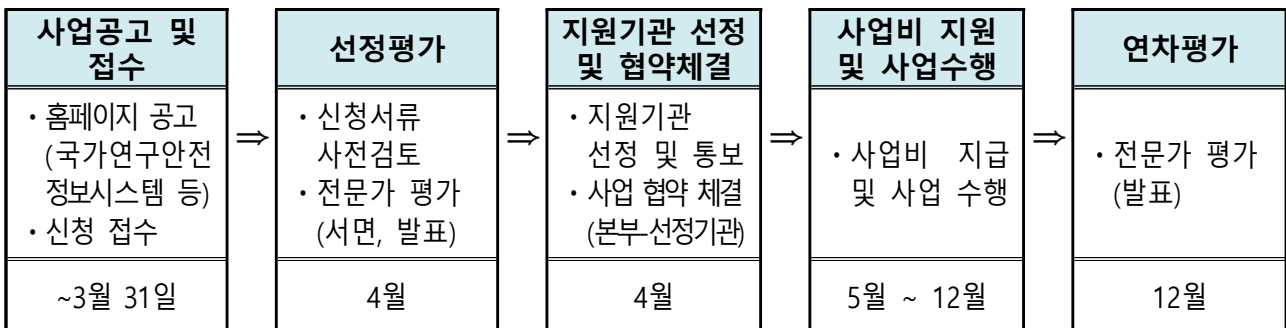
※ 연구실안전법에 근거한 연구실 안전과 관련된 업무만 수행 가능(일반시설, 민방위, 보안업무 등 수행불가)

※ 연구실안전관리비로 활용할 수 있는 항목은 기관에서 확보한 자체예산으로 집행 권장

4. 유의사항

- 전담조직 미구축 기관의 경우, 연차평가(~12월)전까지 신규 구축 완료
- 지원내용의 각 항목에 따라 예산 집행계획을 제출하고, 제출된 계획에 따라 집행. 단, 잔액이 발생할(또는 예정) 경우 반납 필수
- 신청 희망기관의 내규 등에 따라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의 수입·지출이 불가한 경우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지원하여야 함
- 기관장은 사업 수행 후 결과보고서 및 예산 집행 증빙자료를 첨부한 자체 정산서와 관련 요청자료 일체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수행 도중 전담인력 현황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연구실안전 전담조직 지원사업 수행 기관 인력변동 신고서 및 근로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함
- 사업 목적(전담조직 구축 및 전담인력 충원 등) 달성을 위한 노력이 충실하게 이행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조정 및 환수 조치할 수 있음

5. 주요 추진절차 및 일정



※ 세부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연구실안전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에서 접수, 협약체결 및 지원업무 등 주관 수행

6. 선정기준

| 평가항목 | | 배점기준 | 배점 |
|------|----------------|---|------------|
| 정량 | 증원 인력 규모 | · 신규채용 :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 1명당 25점, 비정규직(기간제) 1명당 15점 · 전환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검임→전담 전환인력 1명당 5점 (내부인력의 타 업무 수행자 발령 포함) | 50점 |
| | 가산점 | · 채용공고 시,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 우대 · 전담조직 미보유 기관 · 인건비 초과분 매칭 규모 ¹⁾ | (+15점) |
| 정성 | | · 전담조직 설치·운영계획 ²⁾ 및 전담인력 확보·운용계획 · 연구실 안전관리 체계 강화 ³⁾ 및 안전관리활동 계획 · 중장기 전담조직 발전 및 인력 육성계획 | 50점 |
| 합 계 | | | 100점(+15점) |

- 1) 기관 자체 인건비 계정에서 집행할 증원인력(정규직, 무기계약직 등) 인건비 및 명시된 사업 지원항목에 대한 기관 대응자금(기 확보된 연구실안전관리비 외 별도 재원)
- 2) 전담조직이 설치 예정인 경우 연차평가(12월) 전까지 구축 필요
- 3) 연구실 안전관리 계획 승인·관리체계 및 기관 내부 안전관리 업무 협력체계 구축 등

[증원인력 기준]

- **(채용)** 사업 협약일 이후 신규 채용하여 연구실안전법 제10조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전담)"으로 지정·보고한 사람
- **(전환)** 기관 내부인력을 인사발령* 등을 통해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전담"으로 지정 보고하는 경우

* 부서이동(타부서→전담조직), 안전환경관리자 전환인력(검임→전담) 등

7.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사업 공고일 ~ 3.31.(화) 18:00까지
- 신청방법 : E-mail을 통해 신청(tina5574@kribb.re.kr)
- 제출서류
 - ① 2026년 연구실 안전 전담조직 지원사업 신청서(첨부 1)
 - ② 2026년 연구실 안전 전담조직 지원사업 계획서(첨부 2)
 - ③ 2026년 연구실 안전 전담조직 예산 편성표(첨부 3)

8. 문의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044-202-4859 / taewool23@korea.kr
-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043-240-6436 / tina5574@kribb.re.kr

※ 내용 작성과 관련한 설명내용(청색 박스로 표시된 부분)은 내용 작성 시 제거하고 기술

1. 연구실 안전 전담조직 설치·운영 계획

- ※ 전담조직의 필요성, 기관 조직도(전담조직 설치 전·후 비교), 전담조직 부서명('연구실 안전' 포함 권장), 전담조직 설치시기, 상위조직 및 기관 내부 업무협력 체계, 기관의 전담조직 지원계획 등을 포함하여 기술
- ※ 전담조직을 보유 중인 기관의 경우 현황 중심으로 기술

2. 전담인력 확보 및 운용 계획

- ※ 인력 충원 규모·방법 및 활용계획, 충원 인력별 담당업무 등을 포함하여 기술

3. 기관의 연구실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및 안전관리 활동 계획

- ※ 연구실 단위 안전관리 계획 승인·관리 체계 구축, 기관 내 업무협력 활성화 지원 계획, 기관 차원의 연구실 안전관리 활동 추진계획 등을 포함하여 기술

4. 중·장기 전담조직 발전 및 인력 육성계획

- ※ 기관의 중·장기적 전담조직(인력) 육성 및 연구안전 체계 발전계획, 사업 종료 후 전담조직(인력)의 지속적 유지 방안 등을 포함하여 기술

첨부 3

「2026년 연구실 안전 전담조직 지원사업」 예산편성표

※ 작성요령 : 기관 내 회계기준에 따른 비목별로 작성하되, 예산 집행계획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상세 산출내역 기재(목적 적합성 검토)

1. 지원 사업비

| 구 분 | 산정기준 | 금액(천원) | 비 고 |
|------------------|-----------------------------|--------|-----|
| 전담조직 구축·운영비 | ▪ XXX : 000천원 × 00회 = 000천원 | | |
| 연구실 안전 관리 활동비 | ▪ XXX : 000천원 × 00회 = 000천원 | | |
| 채용인력 인건비 | ▪ XXX : 000천원 × 00회 = 000천원 | | |
| 합 계 | - | | |

2. 기관 대응자금*

| 구 분 | 산정기준 | 금액(천원) | 비 고 |
|------------------|-----------------------------|--------|-----|
| 전담조직 구축·운영비 | ▪ XXX : 000천원 × 00회 = 000천원 | | |
| 연구실 안전 관리 활동비 | ▪ XXX : 000천원 × 00회 = 000천원 | | |
| 채용인력 인건비 | ▪ XXX : 000천원 × 00회 = 000천원 | | |
| 합 계 | - | | |

* 기관 대응자금 : 전환·내부발령 인원의 인건비, 추가 안전활동 비용 등 전담조직 구축·운영 및 전담인력 확보를 위해 기관 자체적으로 편성한 예산(의무사항은 아니므로 기관 자율적으로 편성·제시)

※ 유의사항 : 별도의 연구실안전·유지관리비 외 별도재원으로 편성